

의안번호	2206820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5.2.12.
추 계 번호	24B61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안 제170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안 제56조) 개정안은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및 ②관계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와 이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단 및 관계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따라 발생함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²⁾

① 개정안의 시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수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단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³⁾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

- 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6조⁴⁾에 따라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②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관계전문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외부 관계전문가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⁵⁾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외부 관계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중대재해의 발생건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요청할 횟수, 원인조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5)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요청 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유 등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화재, 폭발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요청일부터 20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